

『부천대학교 동계방학 학과 및 부서 보수공사』

과 업 지 시 서

2019. 1.



부천대학교
BUCHEON UNIVERSITY

과업지시서

본 과업지시서는 동계방학기간 학과 및 부서에서 요청한 보수 공사를 하고자 하며 용역 대상 및 과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용역 대상

- 전기과
- 호텔외식조리과
- 섬유패션비즈니스과
- 정보통신과
- 비서사무행정과
- e-비즈니스과
- 토목과
- 몽당기념관 5층 한국어학당

2. 과업 시점

- 1) 계약 후 즉시 수행
- 2) 2019년 1월(착공일로부터 24일간)
 - ※ 착공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

3. 과업 내용

- 1) 전기과 공간분리 공사
 - 한길관 436호 칸막이(경량150T, 내부수성페인트 양면도장, 전기, 소방, 냉난방회로분리)
- 2) 호텔외식조리과 테이블 보수 등
 - 201,202,205호실 모티스레버교체
 - 203호 제과제빵실(1000*3650*910) 씽크대 제작설치SST(상판교체)
 - 301호 양식조리실 타일교체
 - 301호 양식조리실 조리 시연대 걸레받이(H=100)
 - 401호 FOOD CREATIVE실 안전발판- 체크SST
 - 501호 메뉴개발실 방화문교체(부속일체-1130*2130)
 - 501호 메뉴개발실(방화문) 도장공사(1130*2130)
- 3) 섬유패션비즈니스과 도장공사
 - 한길관 406호 실습실 벽체도장
 - 한길관 409호 실습실 벽체도장

- 4) 정보통신과 악세스 플로어 보수 등
 - 꿈집1204호 정보통신과 악세스플로어 제거 및 마감(논슬립포함)
 - 꿈집1304호 정보통신과 악세스플로어 제거 및 마감(논슬립포함)
 - 꿈집1305-1호 정보통신과 악세스플로어 제거 및 마감(논슬립포함)
- 5) 비서사무행정과 악세스 플로어 보수 등
 - 꿈집505호 비서사무행정과 출입문 기둥제거 및 재설치
 - 꿈집507호 비서사무행정과 출입문 기둥제거 및 재설치
- 6) e-비즈니스과 백페인트그라스 보수 등
 - 꿈집304호 e-비즈니스과 전산정보실습실 논슬립 몰딩보수
 - 꿈집705호 e-비즈니스과 백페인트그라스(몰딩포함)
 - 꿈집706호,707호,807호,906호, e-비즈니스과 학과 명칭변경
- 7) 몽당기념관 백페인트그라스 설치 등
 - 몽당기념관604-1호 강의실 유리철판 고정
 - 몽당기념관602호,603호,604호 강의실 유리철판 교체(몰딩포함)
 - 몽당기념관602호,604호 강의실 방화문 도장
- 8) 토목과 악세스 플로어 보수 등
 - 공학관309호 CAD실 악세스플로어 교체
 - 공학관310호 전산실 철판 받침 보수

바. 기타사항

- 1) 개별 현장방문 필수(장소: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1층 시설관리팀)
 - ※현장 미 방문시 견적제출 무효.
- 2) 동계 겨울방학 시설보수공사 수요조사 참고

4. 업무협의 및 보고

- 1)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과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 - 강의실 공간분리 및 냉난방회로분리 방법
 - 호텔외식조리과 싱크대 제작설치 방법
 - 마감 자재 선정
 - ※ 모든 자재는 KS규격에 맞는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공시 표준시방서를 따른다.
- 2) 의견수렴
 -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발주자와 협의 후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.

5. 제출물

- 1)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예정 일정표와 방수 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공사 시행에 따른 전 과정(착공 전, 공사 중, 준공 후 등)을 사진 촬영하여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.
- 3) 공사 완료 후 주변의 청소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공사 완료 후 수급인은 도면 및 자재 스펙리스트, 마감재 Spare part(설계 물량의 3%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6. 안전관리 및 책임소재

- 1)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운영하며,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한다.
- 2) 안전관리비 사용(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해당 시)은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따르며, 적합한 안전보호구 제공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운영한다.
- 3) 공사 중 일어난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민·형사상 책임을 지며 각종 피해보상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.